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동차를 주차장 등에 부당하게 고정시켜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 송언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53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곽 현 준

목 차

□ 송언석의원 대표발의(제2201553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자동차를 주차장 등에 고정시켜 주차나 통행에 방해하는 행위 금지(안 제26조제1항제4호)	2

□ 송언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53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언석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7. 10.

3. 회 부 일 : 2024. 7.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주차장의 진·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타인의 토지에 부적절하게 자동차를 고정시켜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자동차를 주차장이나 타인의 토지에 부당하게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공공질서를 확보하고 자동차 주차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자동차를 주차장 등에 부당하게 고정시켜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안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동차를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¹⁾이나 타인의 토지에 부당하게 고정시켜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자동차를 강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1)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현행	개정안
<신설> ② ~ ④ (생략)	4. 자동차를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이나 타인의 토지에 부당하게 고정시켜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26조²⁾는 ①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②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해서 방치하는 행위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³⁾, 이 경우에 해당하면 시장·군수·구청

2)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장이 해당 자동차를 견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매각·폐차하는 등 강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차장의 진·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타인의 토지에 부적절하게 고정시켜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따른 강제 처리 요건을 적용하기 어려워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를 주차장이나 타인의 토지에 부당하게 고정시켜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동차를 견인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교통 방해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고 운행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인.

다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주차위반 등 교통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⁴⁾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를 고려할 때, 「자

3) 금지사항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의3. (생략)

8.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9. ~ 28. (생략)

4)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차관리법」에 교통질서 확립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 위반 시에는 동법 제81조⁵⁾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개정안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교통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185조⁶⁾에 따른 일반교통방해죄 및 같은 법 제314조⁷⁾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으로도 개정안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교통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⁸⁾.

아울러 개정안의 내용 중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부당하게 고정시키는 행위”는 현행법 제26조제1항제3호⁹⁾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5)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의3. (생략)

8.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9. ~ 28. (생략)

6)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차량을 주차해 통행을 방해한 건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사례가 있음(‘주차장 봉쇄한’ 송도 불법주차‘ 차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연합뉴스, 2018. 12. 4).

9)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다. 국토교통부 의견

「자동차관리법」 제26조는 장기간 방치되거나 공터 등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광고물을 부착하여 홍보 목적, 숙박 등 운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임.

개정안은 주차장 등에서 일시적으로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개정될 경우 종전의 입법 목적과 다른 결과를 초래됨.

개정안 내용 중에서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부당하게 고정시키는 행위’는 현행법 제26조제1항제3호¹⁰⁾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주차장에서 분쟁으로 인한 부분은 장기 방치된 자동차의 처리 문제가 아니라 주차장과 관련된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법률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방치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되었음.('24.7.10. 시행¹¹⁾)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10)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11)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 의 처
02)6788-5582